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9. . . (제 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내 영유아 방치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관리의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안 제38조의2, 법률 제16251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제40조제4호, 제40조의2제2항, 제45조제1항제1호의4, 제46조제1항제7호, 제54조제4항제7호 신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무상보육 실시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지원한 비용의 반환, 영유아의 보호자가 지급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의 환수를 하거나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를 명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나.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 근거 마련(안 제45조제1항제5호나목,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등이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 5년 이내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5년 이내의 보육교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및 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12. 28. ~ 2019. 2.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보육료 등의 관리 강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단서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5인”을 “5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7호 중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25조제4항제8호 중 “제38조”를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보육료 등의 수납)”을 “(보육료의 수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최초로 받을 때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내용,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의 수납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목적 외 사용 금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16251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제40조의2의 제목 “(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를 “(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한 비용은 보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2.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

경비 등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제42조의2제1항제1호 중 “유용”을 “유용(流用)”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호까지”를 “제8호까지”로 한다.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자

7.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

법률 제16404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5호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38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4호”를 “제4호 또는 제5호나 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유용(流用)”을 “유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
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1의4.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
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제33
조의2 및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
우를 포함한다)에 보육교직원을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
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7.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제46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다만, 어린이집의 원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4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

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48조제1항제8호 중 “제46조제4호”를 “제46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제3호 중 “제38조”를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제54조제4항제6호 중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수납한”을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로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용의 반환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어린이집의 폐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같은 항 제1호의2, 제1호의3, 제1호의4 또는 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린이집의 원장이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린이집의 원장이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린이집의 원장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자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육교사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② (생략)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들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 ----- ----- ----- --.
제15조의3(비상재해대비시설)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u>5인</u>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제15조의3(비상재해대비시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5명</u> ----- ----- ----- ----- -----.

2분의 1 이상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소방·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
5.·6. (생략)	5.·6.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제16조(결격사유)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u>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u>	7. ----- ----- <u>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u>
8.·9. (생략)	8.·9. (현행과 같음)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① ~ ③ (생략)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7. (생략)

8.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9. (생략)

⑤·⑥ (생략)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생략)

<신설>

<신설>

④ -----
-----.

1. ~ 7. (현행과 같음)

8. -----
----- 제38조제1항-----

9.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38조(보육료의 수납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최초로 받을 때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내용,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의 수납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목적 외 사용 금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법률 제16251호 영유아보육법 일
부개정법률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
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
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중
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
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 3의2. (생략)

<신설>

5. (생략)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의 환
수) ① (생략)

<신설>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
해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16251호 영유아보육법 일
부개정법률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
령) -----

-----.

1. ~ 3의2. (현행과 같음)

4.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제34
조에 따른 비용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5.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비용을 반환할 자가 <u>기한 내</u>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한 비용은 보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2.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 ----- 기한까지 ----- ----- -----.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 ----- ----- -----. 1. ----- -----
---	---

<u>유용한 자</u> 2. ~ 4. (생 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5. · 6. (생 략) ② (생 략)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제1호 및 제3호부터 <u>제5호까</u> <u>지</u>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예 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생 략) 법률 제16404호 영유아보육법 일 부개정법률	<u>유용(流用)---</u> 2. ~ 4. (현행과 같음)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u>지원받은 자</u>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자 7.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 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 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 정하게 사용한 자 8. · 9.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제8호까</u> <u>지</u>----- ----- -----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6404호 영유아보육법 일 부개정법률
--	---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 4의8. (생략)

5.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6. ~ 8. (생략)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

-----.

1. ~ 4의8. (현행과 같음)

5. 제38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6. ~ 8. (현행과 같음)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

-- 제4호 또는 제5호나목-----

위로 본다(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2. ~ 4. (생략)

5.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제33조의2 및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육교직원을 함께 태

1. -----

----- 유용 -----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1의4.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

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
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
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② 삭 제

③ ~ ⑥ (생 략)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
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
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
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
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학버스(제33조의2 및 「도
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를 포함한다)에 보육교직
원을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
가 발생한 경우

나. 「도로교통법」 제53조제
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
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
지) ① -----

----- 5년-----

-----.

1. ~ 4. (현행과 같음)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신 설>

<신 설>

5. (생 략)

<신 설>

<신 설>

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7.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
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
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
정하게 사용한 경우

8.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의 원장이 「도로교통법」 제53
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
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
를 입은 경우 5년 이내의 범위
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의 지도·감
독 하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

	<u>장이 한 행위로 본다. 다만, 어린이집의 원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u> <u>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u>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2. (생략)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① ----- ----- ----- ----- ----- 5 년----- ----- -----. 1.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 7. (생략)

8. 제46조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생략)

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보유·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

-----.

1. ~ 7. (현행과 같음)

8. 제46조제1항제4호-----

--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① -----

-----.

집의 원장은 공시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공시정보”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2. (생략)

3. 제38조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4. ~ 6. (생략)

② ~ ⑥ (생략)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다른 어린이집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

1.·2. (현행과 같음)

3. 제38조제1항-----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② ~ ④ (생략)

제54조(벌칙) ① 삭제

②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 . -----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 경우에만 ----
----- .

1. 2. (현행과 같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4조(벌칙)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 5. (현행과 같음)

6. -----

법으로 <u>제38조에 따른 보육료</u> <u>등을 수납한 어린이집의 설치</u> • 운영자 <u><신 설></u> 7. (생 략)	----- <u>제38조제1항에 따른 보</u> <u>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u> <u>을 받은</u> ----- ----- 7. <u>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u> <u>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u> <u>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u> <u>정하게 사용한 자</u> 8. (현행 제7호와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541